

#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

## 일부개정법률안

### (남인순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8590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2. 12.

발 의 자 : 남인순 · 김병기 · 정춘숙  
윤일규 · 신창현 · 윤관석  
박홍근 · 금태섭 · 백혜련  
김병욱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리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, 의료광고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며,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수수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, 의료광고의 특례규정은 개정된 「의료법」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,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평가하고 지정하는 업무를 위탁받은 지원기관이 업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어 실무처리 시 혼란이 우려됨.

이에,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유치업자가 요구해서는 안 되는

과도한 수수료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, 외국인환자 유치의  
료기관 의료광고 심의에 관하여 개정 「의료법」의 내용을 반영하며,  
지원기관에 위탁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의 재위탁  
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9조, 제15조 및 제21조).

##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과도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2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”을 “「의료법」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”를 “제56조, 제57조 및 제57조의2”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중 “위탁”을 “위탁·재위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”을 “지원기관”으로, “절차 및 운영”을 “절차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”으로 한다.

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재위탁할 수 있다.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1조의 개정

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도한 수수료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후 최초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의료광고 기준·심의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

시행 후 최초로 의료광고를 심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 재위탁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

행 당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

으로부터 유치기관 평가 및 지정 업무를 재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

기관은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치기관 평가 업무를 재위

탁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9조(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)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때 <u>과도한</u>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등 중대한 시장질서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② (생 략)	제9조(과도한 수수료 등의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제2항에 따른 수수료율의 범위를 초과하는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의료광고에 관한 특례) ① (생 략) ②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<u>보건복지부장관</u> 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.	제15조(의료광고에 관한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의료법」 제57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-----.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제56조, 제57조 및 제57조의2-----.
③ (생 략)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의 기준과 심의에 관하여는 「의료법」 제56조 및 제5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	

제21조(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 
의 위탁 등) ① (생략)

<신설>

② (생략)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관의 지정의 기준·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(지원기관의 지정 및 업무  
의 위탁·재위탁 등) ① (현행과  
같음)

② 지원기관은 제1항제4호에  
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일부를  
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 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 
재위탁할 수 있다.

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
④ 지원기관-----  
절차·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재위탁-----  
-----.